

8) 1930년대의 지역사정

농민운동은 그 자체로서 직접 민족독립을 위한 움직임이 보인 것은 아니었다. 더욱이 순천의 경우 항쟁의 대상이 주로 한국인 지주였다는 점에서 농민운동이 얼마나 항일운동의 의미를 갖는가라는 문제가 대두된다. 그러나 농민운동의 발흥은 3·1운동 이후 자극된 민족주의적 기풍과 사회의식의 고양 속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민족모순과 체제모순을 함께 해결코자 하는 움직임으로서 자리매김될 수 있다.

농민운동이 가지는 그러한 의의는 농민운동의 퇴조와 더불어 지역의 엘리트층의 친일화 경향이 강화되었다는 점으로도 반증될 수 있다. 엘리트의 친일화 경향은 체제의 위협을 느낀 지주층에 국한되지 않는다. 농민운동에서 지도적 역할을 한 인사들 가운데에서도 운동을 청산하고 체제에 편입된 예가 있다. 농민운동이 중심적인 공공활동으로 자리를 잡았던 서면에서도 임태유와 허준 같은 지도급 인사들이 1920년대 후반부터 일제의 지방통치에 협력하는 위치로 변해갔다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임태유는 허준에 이어 면장에 부임하였으며, 허준은 그가 조직한 마을 진흥회를 1932년부터 전개된 농촌진흥운동에 접목시켰다. 그의 진흥회는 마을 진흥회 가운데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았으며, 그 결과 허준은 1937년 총독부의 표창을 받기도 한다.¹⁾ 일제는 농촌진흥운동을 통해 지주보다는 농민 가운데 중견층을 육성하여 준전시체제 농촌통제의 골간으로 삼고자 하였다. 농민운동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던 지도력 있는 인사들이 그러한 편입의 좋은 대상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외서면의 강의연(姜義淵), 송광면의 이규상(李奎祥)과 같이 널리 알려진 중견인물이 농민운동 발흥기에 운동에 참여하거나 후원한 경험이 있는(비록 그 관여의 정도는 낮았지만) 인물들이었다는 점은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이를 반드시 이탈이라는 견지에서만 파악할 필요는 없다. 이미 강조했듯이 농민운동 참여와 후원의 동기는 다양한 것이었고, 농민운동은 그것이 표방한 목표나 구호와 관계없이 지역사회 공공활동의 많은 공간 중 하나이며, 엘리트 배출의 장으로서 기능을 하였던 것이었다. 농민운동을 통해 지역의 영향력을 획득, 강화 또는 확인한 인물들은 농민운동이 퇴조한 공백 속에서, 위에서 부과된 농촌진흥운동이라는 공간에 어느 정도는 자연스럽게 편입되었다.

농민운동의 해체와 더불어 농민운동의 핵심 지도층 내부에도 갈등이 야기되었다. 조선공산당사건으로 함께 고초를 치른 정순제와 박병두가 농민운동에 투자된 재산을 둘러싸고 민사소송의 원·피고로 다툰 사건이 발생하였다. 정순제는 이영민의 권유를 받아 순천농민연합회의 건물 구입을 위해 1,000원을 회사하였는데 1934년 순천농조가 공식 해산한 후 매각된 건물대금의 일부를 회수하기 위해 대금보관인인 박병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²⁾

그러나 이러한 예를 들어 농민운동 참여세력의 의지를 꺾어주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되지 못한다. 농촌의 구석구석까지 장악한 일제의 치밀한 통제망 속에서도 농민운동의 재건을 모색하고자 하는 시도가 계속되었으며, 박병두는 그 와중에 검거되어 고문 끝에 목숨을 잃기에 이르렀다. 다만 그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농민운동 및 기타 사회운동이 공개적 대중운동으로 부활하여 강요된 침묵을 깨지 못하였다는 점, 지역사회의 갈등이 대중운동을 통해 해소되지 못한 채 침묵 속에 심화됨으로써 해방 후 치열한 좌우익의 대결로 확대되었다는 점은 큰 비극이었다.

1) 朝鮮總督府, 『農山漁村振興功績者名鑑』, 1937, 117~119쪽.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 1934년 民第276號 판결.

